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기 준 서 번호 : HO-송변-기준-022

제 · 개정번호 : <u>17</u>

제 · 개정일자 : 2019. 9.27

작	성	자	장 영 훈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 팀원)
검	토	자	한 병 준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 실장)
승	인	자	박 상 서 (송변전운영처장)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제 · 기	배정 이력				
Ver	개 정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숭인자	숭인일자	비고
00	최 초 제 정				'96.12.01	제정
01 ~ 10	기준 내용 일부 개정					개정
11	기준서 전면개정	이강수	오중근	유명호	'10.08.13	개정
12	기준내용 일부 개정 -시공협력회사 Small Giants TDR 반영	이강수	최영철	구본우	'11.04.04	개정
13	 필수 및 선택인력 변경내용 설비운 영부서 미 통보시 제재기준 신설 신설사업소 직제 순위 반영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반영 전문자격 보유 배점 조정 전력신기술 또는 특허보유 가점인정 내용 강화 등 	박장민	이봉희	신명식	'15.03.19.	개정
14	시공가능금액 상향입찰시기 변경비리행위 차단위한 제재기준 강화적격심사 기준 중 시공평가 인정기간 개정우수 기술인력 보유 전문회사 우대 등	박장민	이봉희	신명식	'15.08.19.	개정
15	 중복낙찰 3순위 결정시 설계공사비 큰 사업소 필수인력 확보인원 증원 25.8kV 설치 공사금액 상향 등 	박장민	김태익	신명식	'16.10.18.	개정
16	 계약변경시 낙찰율 □ 협의조정율로 변경 휴전작업 안전표지 제작설치 등 안전 관리 강화 적격심사 심사기준 계약예규 반영 	박장민	김태익	김재승	'17.10.25.	개정
17	 명칭변경: 변전협력 → 변전정비회사 안전사고 은폐 판단 및 제재기준 반영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변경 반영 (기술회사 우대배점 및 일자리창출 가점) 	<u> 장영훈</u>	<u>한병준</u>	<u>박상서</u>	<u>'19.09.27</u>	<u>개정</u>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송변전운영처

-16	1000	0	7	ㅂ
1.	\sim	8	77	71

- 전사 적용
- □ 해당 처-실 / 해당 사업소 적용
- □ 작성부서만 적용(부서명 : _____

2. 작성 부서

	작성자			검토자			승인자	
성명	서명	잎자	성명	서명		성명	the second secon	일자
장영훈	本场点	19.8.19	한병준	沙安	19 4.19	박상서	許な例	19.8.20

3. 관련부서 합의

소속	경 채	성명	서 명	일 자
22 77		0 0		

- 4. 업무표준 관리부서 검토 (ERP 등록시 품질경영실 합의결재선 자동지정)
- 5. 사규 관리부서 검토(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정보공개 및 제·개정 예고대상)

즤 꽥	성 명	검토 결과	잎 자
법 무 실 장	정용화	对方	2019.8.23

6. 일상감사(전사공통적용 지침·기준)

격 채	성 명	검토 결과	일 자
일상감사실 팀장	333		

담당 : 송변전운영처 변전운영실 장 영 훈(☎061-4732)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목 차

1.	복 적	6
2.	적용범위	6
3.	용어의 정의	6
4.	정비회사 운영	7
5.	정비회사 시공 대상공사	7
6.	공사설계	9
7.	입찰	10
8.	낙찰절차	11
9.	계약체결	13
10.	계약기간	13
11.	계약보증금	14
12.	하자보수보증금	14
13.	공사착공	14
14.	내역서 제출	14
15.	계약변경	15
16.	계약의 해지	15
17.	시공절차	15
18.	공사관리	16
19.	안전 및 품질관리	17
20.	공사검사	18
21.	정비회사 관리	18
22.	정비회사 평가	24
23.	불법 하도급 확인	25
24.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	26
25.	긴급동원	26
26.	모의고장 복구훈련	27
27.	기타사항	27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61
제・개정일자	2019. 9.27	

[별표]

별표#1	필수장비(공구) 확보기준	29
별표#2	주변압기 및 개폐장치 보통점검 가능회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기준	30
별표#3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	31
별표#4	정비회사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기준	32
별표#5	휴전작업 종류별 안전표지물·VM(Visual Management)	33
[부록]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36
붙임#1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50억 미만 3억 이상]	42
붙임#1-	-1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44
붙임#2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3억 미만 8천만원 이상]	50
붙임#2-	-1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52
붙임#3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결과표	54
붙임#4	정비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55
붙임#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58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6/61
제・개정일자	2019. 9.27	

1. 목 적

이 기준은 각종 변전공사의 적기시행과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및 동 시행령 제21조,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변전정비회사의 선정 및 선정된 정비회사의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기간중 시행할 변전설비 유지보수공사와 긴급 상황 발생시 변전정비회사가 시공하는 긴급복구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3.1 본사주관부서 변전설비 운영업무를 주관하고 총괄 관리하는 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 3.2 설비관리사업소(부서) 변전설비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1차사업소(담당부서)를 말한다.
- 3.3 설비운영사업소(부서) 변전설비 운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1차사업소 직할 및 2차사업소(담당부서)를 말한다.

3.4 변전전기원

변전설비의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에 필요한 시공기준 및 각종 작업방법에 관하여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전전기원 기능평가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변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의 필수기술자격보유자·필수기능보유자로 자격이 유효한 자를 말한다.

3.5 공사감독원

설비운영부서장이 임명한 자로서 공사 시행여부의 확인, 계약된 공사의 시공 정도가 설계서, 시방서 등 계약관련 문서의 요구 수준대로 되어 있는 지의 확인 및 이에 따른 보고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6 정비회사

변전설비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선정된 전기공사업체를 말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7/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3.7 전기공사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3.8 관할구역

우리 회사 직제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설비운영사업소의 변전설비 관리구역 또는 변전설비를 대상범위로 한다.

3.9 설비고장

송·변전설비중 주설비나 부속설비의 이상상태로 주설비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말한다.

3.10 지정관리기관

지정교육기관이 시행하는 업무, 경력관리, 자격관리업무 등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본사주관부서가 지정한 관리기관을 말한다.

3.11 변전전문회사

우리 회사의 변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의 자격심사 평가 절차에 따라 등록된 회사로서 자격이 유효한 회사를 말한다.

3.12 변전설비

154kV급 이상 변전소에 설치 운영하는 주변압기, 25.8kV급 이상 차단기 및 단로기, 조상설비, 피뢰기, 보호배전반을 말하며 이외의 부속설비 및 부속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3.13 시공실적

154kV급 이상 변전소의 변전설비 시설 및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말한다.

3.14 안전사고 은폐

정비회사에서 안전사고 발생 후 3일 이상 설비운영부서에 보고를 지체한 경우 안전사고 은폐로 본다

4. 정비회사 운영

설비운영사업소별로 1개의 정비회사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차 사업소장 판단하에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인근의 2~3개 사업소를 통합 하여 1개 정비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8/61
제・개정일자	2019. 9.27	

5. 정비회사 시공 대상공사

- 5.1 정비회사 공사설계서에 포함되는 공사
 - 5.1.1 모든 수익적 지출 정비공사(스위치야드 제초, 기기조명등 정비, 변전설비 청소 등 포함)
 - 5.1.2 변전전문회사 대상공사를 제외한 자본예산공사
 - 5.1.3 변전설비의 부속설비(수냉각, 공기압축기 등)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 5.1.4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
 - 가. 주변압기(Sh.R 포함), 개폐장치(GIS, GCB)의 정밀점검공사
 - 나. 765kV급 변전설비 점검공사
 - 다. 변압기의 보통점검이 OLTC 점검공사와 병행하는 공사
 - 라. 본사의 방침에 의해 특정 공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시키는 공사, 소방법 등 전기사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전문공사
- 5.2 설계변경 대상(추가 및 제외공사)
 - 5.2.1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추가할 수 있다.
 -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는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의 수익적 지출 및 단위사업별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의 자본적 지출 정비공사
 -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0400) 제6절 6-4 긴급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자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전문공사를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다. 개폐장치전문회사가 정비회사일 경우 추정가격 8,000만원 이하 규모의 <u>25.8kV VCB, GIS, GCB, 친환경 절연개폐장치</u> 설치 및 관련 부대공사 단, 동일 변전소내 GIS(170kV 및 25.8kV) 통합발주 대상 공사는 제외한다.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9/61
제・개정일자	2019. 9.27	

- 5.2.2 정비회사 공사설계서[5.1항]에 포함된 다음의 공사는 정비회사가 시공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자격회사에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송전정비회사로 선정된 회사가 활선애자청소 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송전정비회사에 활선애자청소공사를 시공지시할 수 있다.
 - 가. 주변압기(Sh.R포함), 개폐장치의 보통점검공사
 - 나. 활선애자청소공사
- 5.3 적용의 예외

공사의 시급성 또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설비운영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기준에 의하여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공사설계

- 6.1 설계 공사비
 - 설비운영부서에서『5.1』항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 6.2 설계서 작성

설비운영부서는 과년도 실적, 물가 상승률, 설비증가 및 집행년도 예산을 고려하여 단위사업별 1건으로 작성하고 『7.2』 항 입찰시기를 고려하여 계약의뢰한다.

- 6.3 다음의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6.3.1 시행 물량이 배정예산 및 여건 변동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단, 물량증가는 당초 계약에 포함된 비목 중 시행 효율상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한다.
 - 6.3.2 한전의 관련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 6.3.3 계약물량은 계약 이행기간 내에 시공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계약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 6.3.4 정비회사가 제재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21.1.2항에 따라 계약해지할 수 있다.
 - 6.3.5 대관 인허가, 민원, 자재, 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완료가 곤란한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 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착수하지 않고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시공 중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공사는 목적물 단위로 완료하고 나머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0/61
제 • 개정일자	<u>2019. 9.27</u>	

지는 취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 상기 (가),(나)항의 경우 준공정산은 취소되지 않은 공사의 완료를 기준으로 시행하며 (나)항에 의한 시공지연시 이에 따른 계약이행 지체 관련 제재는 하지 않는다.
- 라. 상기(나),(다)항에 의해 계약기간 이후로 준공이 연기된 정비회사는 10.1항의 경우 이외에는 계약기간 이후의 정비회사 대상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

7. 입 찰

7.1 입찰 참가자격

변전정비회사의 입찰 참가자격은 전기공사등록업체로 아래 항목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자격이 있는 회사로 한다.

- 7.1.1 154kV급 이상 변전소의 변전설비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
- 7.1.2 345kV 이상 변전소 건설공사 적격업체로 등록된 회사
- 7.1.3 변전전문회사로 등록되어 자격이 유효한 회사

7.2 입찰시기

변전정비회사의 입찰(개찰)은 계약기간 종료연도 11월 넷째주 수요일 동일한 시간대(15:00)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종료 다음 날로 순연한다.

7.3 입찰방법

정비회사의 입찰은 전자입찰로 시행하며, 입찰방법은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계약규정에 따르되 세부업무처리방법은 아래와 같다.

- 7.3.1 입찰대상 설비운영사업소는 적격심사대상자를 1순위에서 10순위까지(필요시사업소장이 축소 또는 확대 가능) 선정하여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결과표(붙임#3)를 작성하고 이를 1차 사업소에 제출한다.
- 7.3.2 계약담당부서는 입찰공고시 본 정비회사업무처리기준, 적격심사기준을 공고 하여야 한다.
- 7.3.3 계약담당부서는 제출받은 적격심사결과표를 집계하여 8.1항에 의거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에 통보한다.
- 7.3.4 설비운영사업소는 계약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낙찰예정자의 자격을 8.3항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1/61
제・개정일자	2019. 9.27	

에 의거 확인하여야 한다.

7.4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한전계약업무처리기준 등 관련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8. 낙찰절차

- 8.1 낙찰예정자의 결정은 계약규정 및 적격심사기준에 따르되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8.1.1 낙찰 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다른 사업소의 변전정비회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일한 회사가 중복 낙찰된 경우 낙찰 결정 사업소외의 다른 사업소의 낙찰은 자동 취소되며 후순위 회사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된다.
 - 8.1.2 동일한 회사가 타 사업소와 중복 낙찰된 경우의 결정 순위
 - 가. 1순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 구역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회사
 - 나. 2순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설비관리사업소의 관할 구역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회사
 - 다. 3순위: 우리 회사 사업소의 설계공사비(예비가격기초금액)가 큰 사업소
 - 8.1.3 설비운영사업소는 중복낙찰되지 않도록 설계공사비(예비가격기초금액)가 큰 사업소의 낙찰결과를 참고하여 최종결정한다.

8.2 낙찰예정자의 구비사항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회사는 낙찰예정자 자격확인일까지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이를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8.2.1 인력확보

가. 필수인력

정비회사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은 지정교육기관에서 인증한 변전전기원 2급이상 자격소지자로서 설계공사비의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명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는 6명이상, 20억원 이상인 경우는 7명이상이어야 한다.

- 나. 선택인력[5.2.2항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구비조건]
- ① 주변압기(Sh.R포함), 개폐장치의 보통점검공사를 위한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
- ② 활선애자청소를 위한 활선작업조 편성 승인(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준용)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2/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다. 필수인력이 선택인력의 자격을 구비한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을 수 있다.
- 라. 변전정비회사의 필수인력은 타 분야(송전, 배전) 및 타 사업소 정비회사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8.2.2 장비확보

가. 필수장비

정비회사는 별표#1의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선택장비

5.2.2항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비회사는 별표#2 및 활선작업조 편성 규정에서 정한 장비와 인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 다. 정비회사는 계약기간 중 장비의 고장, 파손, 손·망실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 수리, 검교정 및 보충하여야 한다.
- 8.2.5 정비회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정비회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는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가. 관할구역 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 ① 현장사무소에는 돌발고장 등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복구가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 체계 확보, 기술인력 상주 및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 ② 정비회사에서 현장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사무소의 임차 및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설비운영사업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운영하여야 한다.
- ③ 처음부터 현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의 자격확인시 ②항 규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적격심사기준에서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에 의한 가점 부여시 현장사무소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으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판단한다.
- 나. 정비회사의 계약 해지 및 해제에 따른 연대보증 시공 또는 잔여기간에 대해 정비회사로 선정 계약된 경우

8.3 낙찰예정자의 자격 확인

계약담당부서는 낙찰 후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낙찰예정자를 설비운영부서에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3/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통보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휴무일 포함) 이내에 해당회사에 대하여 다음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장비의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사항의 적정여부를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부서로 통보하고 계약담당부서는 3일 이내(휴무일 제외)에 해당회사에 이를 통보한다.

8.3.1 인력확인

- 가. 설비운영부서는 필수 및 선택인력에 대한 낙찰예정회사의 입사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회사는 필수 및 선택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 대한전 기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 등 당해 회사의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해당 낙찰예정회사의 등록(보유) 인력이 타 분야(송전, 배전) 정비회사와의 중복 등록(보유)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3.2 장비(공구)확인

장비(공구)는 기능, 동작상대, 수량 등 현장실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사진, 구입관련 세금계산서, 장비등록증 또는 공증된 임차계약서 등으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검교정 일자 및 성적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검교정 결과 부적합품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장비는 보유수량에서 제외한다.

8.3.3 낙찰예정자의 주된 영업소가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8.2.5항의 규정에 따른다.

9. 계약체결

- 9.1 계약담당부서는 8항의 낙찰절차에 의거 확인한 설비운영부서의 통보결과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자격이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9.2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된 공사는 직전에 계약된 정비회사와 연장 계약하여 시공할 수 있다.
- 9.3 '8.2'항에 규정된 사항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절차에 의해 입찰을 실시하며 이 경우 미 계약회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4/61
제・개정일자	2019. 9.27	

10. 계약기간

- 10.1 정비회사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이행기간은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익년도 12월 말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이 지연될 경우 해당 계약일로부터 이행기간 종료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10.2 계약이행을 할 수 없는 정비회사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 신규 계약된 회사와의 계약기간은 당해 계약기간 중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11. 계약보증금

- 11.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및 동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 11.2 계약금액 변경시 보증금 납부

계약기간내에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12. 하자보수보증금

- 12.1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른다.
- 12.2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른다.

13. 공사착공

- 13.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이 완료되면 계약규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착공신고서 제출 및 시공관리책임자계와 착공신고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 13.2 정비회사는 착공 전 연간 시행물량에 대한 연간 시공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3.3 계약상대자는 '13.1 및 13.2'항에서 제출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설비운영부서에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5/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13.4 계약상대자는 당사에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결원 시 즉시 보강하여야 하며 변동 사항을 설비운영부서에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내역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 제169조(내역서 제출)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에 맞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설비운영부서의 검토를 받아 착공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계약변경

- 15.1 설비운영부서는 공사시행내용 및 공사비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 및 표 준품셈관리규정 제3장(공사변경)에 의해 변경금액, 변경공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계약규정 제176조(계약변경 의뢰)에 의거 계약담당부서에 계약변경을 의뢰한다. 단,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처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선 시공한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종합하여 조치할 수 있다.
- 15.2 추가공사 또는 증가물량이나 신규비목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단가는 계약업무처리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2항에 의거 설계변경 당시(공사통보서 발행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우리회사와 정비회사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한다.
- 15.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 시행하며, 계약상대자와 지수조정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6. 계약의 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해지 관련 조항 및 정비회사 제재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대하여 연대보증회사에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6/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대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연대보증 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를 선정하여 시공한다.

17. 시공절차

- 17.1 정비회사는 공사 착공전 설비운영부서에 연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7.2 설비운영부서는 유사장소에서의 작업이 시차별로 분산된 경우 작업 일정을 조정하여 가능한 유사장소의 작업이 동시에 병행시공 가능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회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공정계획에 반영한다.
- 17.3 설비고장 등 긴급한 공사의 경우 설비운영사업소장은 정비회사에게 선착공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정비회사의 적격업체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자격에 따른다.
- 17.4 정비회사는 천재지변, 고장복구, 긴급 유지보수·휴전작업·순시점검, 모의고장 복구훈련 동원 등 긴급업무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운영사업소장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회사는 타 공사에 우선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17.5 정비회사가 변전전문회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는 전문회사 대상공사 범위의 긴 급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 17.6 정비회사가 계약기간중 변전전문회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변압기(Sh.R 포함), 개폐장치의 보통점검공사를 시행 할 수 있다.
- 17.7 공사현장이 동시에 2개소 이상 발생하여 모든 작업장소에 시공관리책임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중요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책임자가 입회하며 기타 개소에는 해당 시공부서에서 승인받은 현장작업책임자를 배치할 수 있다.

18. 공사관리

18.1 정비회사는 정비공사시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필수 및 선택인력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비회사는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설비운영부서로 증빙서류(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첨부한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 후 6개월 동안은 최초 등록한 보유인력의 30%를 초과하여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7/61		
제・개정일자	2019. 9.27		

변경할 수 없다.

- 18.2 정비회사는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을 필한 자로 하여금 공사를 관리하고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전에 교육 미이수 작업자의 작업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시공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3 주변압기 및 개폐장치의 보통점검 작업은 별표#2의 구비조건에 맞는 장비 및 기술 인력에 의하여 시공할 수 있다.
- 18.4 활선작업은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에 따르며 활선작업조가 편성 승인된 경우에 만 시공할 수 있다.
- 18.5 변전정비회사는 모든 공사의 시공에 있어 시공관리책임자 입회하에 적정한 기술인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책임이 있으며, 필수기술 및 필수기능인력도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 만족시 시공관리책임자로 겸직 또는 선임할 수 있다.

19. 안전 및 품질관리

- 19.1 정비회사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착공신고서 제출시 전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를 설비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9.2 정비회사는 시공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하며, 사고처리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정비회사 책임으로 한다.
- 19.3 설비운영부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Guide Book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설계에 반영하고, 정비회사는 우리회사의 안전관리비 사용 Guide Book을 준수하여 집행 및 정산을 한다.
- 19.4 정비회사는 <u>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시 설비운영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u> 또한, 설비운영부서의 요구시 정비회사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및「사업개시 사업장 현황」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운영부서는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한 후 안전 사고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에 의거 제재조치한다. <u>정비회사가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상 보고를 지체할 경우 은폐시도로 간주하여 추가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다.</u>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8/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19.5 정비회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속직원 이 안전작업 수칙을 준수하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19.6 정비회사는 계약기간 중 매월 1회이상 재해예방 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또는 컨설팅을 받고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지도 또는 컨설팅 비용이 안전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한 경우는 기술지도 또는 컨설팅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 19.7 정비회사는 자체 보유한 안전장구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가표준기 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또는 한전에서 인정한 시험검사 대행업체 로부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험을 받아야 하며, 시험성적서 사본을 공사현장에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 19.8 설비운영부서는 정비회사가 적합한 안전장구를 사용하는지 반기 1회 이상 점검 한다.
- 19.9 정비회사로 선정된 회사는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 & K-OHSMS 18001) 인증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 19.10 정비회사의 조달자재는 신품으로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하며, 자재를 사용하기 전 설비운영부서의 검사를 받아 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야 한다. 단,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물 이상으로서 공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19.11 정비회사는「휴전작업 안전표지 제작·설치 기준」에 따라 시공부서에서 제시하는 안전표지물(VM 활동 포함)을 구비하여 휴전 작업별 현장에 설치하여야한다.[별표#5 참조]

20. 공사검사

- 20.1 기성고 검사 및 지급
 - 20.1.1 정비회사는 설비운영부서의 공사통보서에 의해 시행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기성고 검사 및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 20.1.2 설비운영부서는 정비회사로부터 기성고 검사 및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 제181조, 제182조와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사규-기술관리0400) 제5절(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19/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20.2 준공검사 및 준공불 지불

- 20.2.1 공사 준공일은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비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이 지체된 경우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 제184조(지체상금의 징수)에 의거 처리한다.
- 20.2.2 정비회사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당해연도에 공사통보한 정비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송변전운영협업시스템(공사관리)으로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 20.2.3 설비운영부서는 정비회사로부터 준공검사 및 준공대금 지급 요청을 접수했을 경우 계약규정(사규-재무물자0300) 제181조, 제182조와 공사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사규-기술0400) 제5절(공사검사)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21. 정비회사 관리

21.1 정비회사 제재

21.1.1 이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정비회사가 계약기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기준에 따라 정비회사를 제재할 수 있다.

21.1.2 정비회사 제재기준

구 분	위약벌	계약해지
1. 시공통보 불응 또는 계약위반 사항의 시정요구 불응		3회
2.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정전고장이 발생한 경우		3회
3. 안전사고 발생(누계점수 기준) - 안전사고 은폐시 (+50점)	250~1000만원	100점
4. 불량자재 사용		3회
5. 안전지도서 발행 (누계점수 기준)	100만원/회	100점
6. 시공불량		5회
7. 휴전시간 30분 이상 지연(지장전력이 발생한 경우한 경우에 한하며 당사 사유분 제외)		3회
8. 공사하자 또는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하여 사회 문제화 된 경우		3회
9. 금품·향응 제공 및 전달에 대해 대내·외 조 사결과 사실 확인시(감사실, 기동감찰팀 및 대 외기관 등)		1ই]
10. 계약기간중 돌발고장 발생으로 비상동원시 적		2회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0/61		
제・개정일자	2019. 9.27		

정인력 및 장비가 도착 요구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11. 긴급동원 및 모의고장 복구훈련 불응	2회
12. 타 분야(송전, 배전) 및 타 사업소 정비회사와	2회
중복 등록(보유)된 인력의 교체 요구 불응시	4월
13. 정비회사 귀책 사유로 개별단위공사의	3회
준공기한 초과	2월
14. 해당 정비인력(필수, 선택인력) 및 필요장비	3회
기준 미달(수시확인)	0월
15. 계약기간 내에 정비회사의 주된 영업소 또는	1회
현장사무소가 관할구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	1외
16. 계약 및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1회
부정행사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1월
17. 필수 및 선택인력 변경시 설비운영부서에 변	3회
경승인 요청서 미제출 경우	J.P.
18. 안전관리 소홀	5회
19. 계약 후 6개월 동안 최초 등록한	1회
보유인력의 <u>30%</u> 초과 변경 시	1위

21.1.3 설비운영부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계약기간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사항과 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정비회사를 제재한다.

21.1.3.1 대 상

- (1) 공사 중(공사중지 포함)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정비회사
- (2) 공사 중(공사중지 포함) 우리회사에 의해 안전지도서를 발행받은 정비회사

21.1.3.2 항목별 제재기준

내용 항목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기준		중도해지	
	구분	계약금액	1명당 벌점	
시키기 - 비기	사망	5억원 이하	60점	
안전사고 발생	\ \f\ \f\ \ \ \ \ \ \ \ \ \ \ \ \ \ \ \	5억원 초과~50억원	50점	누계 벌점
	부상	5억원 이하	30점	100점 이상
	T 8	5억원 초과~50억원	25점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20점			
안전관리 소홀	·1건당 20점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1/61		
제・개정일자	2019. 9.27		

- 주1) 부상은 4일이상 휴업 또는 입원시 적용
- 주2) 제재항목별 중도해지 조건은 계약기간 누계치 기준임
- 주3)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벌점 산정 기준은 재해정도가 가장 큰 재해자 1명의 벌점을 100%적용, 나머지는 계약금액별 벌점 부과기준의 50%적용 후 합산한다.(소수점이하 절사)
 - ☞ 예시(5억원 이하): 사망 2명, 부상 1명 → 105점

벌점 부과 [60 + 30 + 15]

- 주4) 안전사고 발생시 제재기준은 안전담당부서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계약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귀책에 의한 사고로 판단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정비회사측 작업자 또는 정비회사의 귀책이 명백하고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계약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주5) 안전관리 소홀은 표준공법 미준수, 공사현장 모니터링 미이행, 안전관리 비 미집행 또는 목적외 사용, 본 기준의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 미참여 시 적용한다.
- 주6) 정비회사가 안전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경우는 상기 제재점수의 1.5배를 가중 적용 한다.(소수점 이하 절사)
- 주7) 우리회사로부터 우수 정비회사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은 정비회사가 안전지도서를 발부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제재를 감면한다.

21.1.3.3 조치방법

21.1.3.2의 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는 5일 이내에 "[붙임 4] 정비회사 제재사실 통보서"에 의거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 21.1.4 21.1.3항에 의한 제재를 적용받는 정비회사는 다음에서 정한 위약벌을 납부하도 록 한다.
 - 21.1.4.1 위약벌 부과기준
 - (1) 안전사고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2/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기약금액별 위약벌 부과기준 구분		비고	
1 正	계약금액	위약벌	비끄
사망	5억원 이하	500만원	1명당
	5억원 초과 ~ 50억원	1,000만원	100
부상	5억원 이하	250만원	1명당
1 0	5억원 초과 ~ 50억원	500만원	100

(2) 안전지도서 발행: 1건당 100만원

21.1.4.2 위약벌 적용방법

- (1) 안전사고 1건에 재해자가 다수일 경우 위약벌 산정기준은 재해 정도가 가장큰 재해자 1명의 위 약벌을 100% 적용, 나머지는 위약 벌 부과 기준의 50% 적용 후 합산한다.
 - ☞ 예시(5억원 이하): 사망 2명, 부상 1명
 - → 875만원 [500만원 + 250만원 + 125만원]
- (2)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1.1.4.3 조치 방법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장은 발생 항목별 제재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약벌의 수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 한다.

- (1)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 (2)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 (3)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21.1.5 21.1.3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정비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설비운영부서는 안전사고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할 때까지 정비회사에게 당해 공사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 21.1.6 21.1.3항에 의한 제재 적용과 별도로 정비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를 발생시키고 그 안전사고로 인해 당해 공사의 목적을 달성할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3/61		
제・개정일자	2019. 9.27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회사는 당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21.1.7 정비회사는 계약후 6개월 이내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 K-OHSMS 18001)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관은 KAB(한국인정지원센타) 또는 안전보건공단에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정비회사가 기간 내 인증을 받지않을 경우 인증을 받을 때까지 매월 1회 안전지도서를 발행한다.
- 21.1.8 정비회사 제재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설비운영부서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부서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부서는 필요 한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21.1.9 정비회사 제재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 21.2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과실로 인한 설비고장을 유발한 정비회사는 정비회사 제재와 병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비고장 위약벌을 납부하도록하다.

21.2.1 대 상

하자담보 기간내의 공사로서 불량기자재를 사용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설비고장을 유발한 정비회사 또는 공사 시공중(공사중지 포함) 정비회사 과 실로 인하여 설비고장을 유발한 정비회사

21.2.2 설비고장 발생회수별 위약벌 부과기준

구 분	위 약 벌	11 江
765kV급 설비	400만원	
345kV급 설비	300만원	1 5] r.).
154kV급 설비	200만원	1회당
66kV 이하 및 기타설비	100만원	

- 21.2.3 설비고장의 경중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설비고장 위약벌 부과와 병행하여 계약에 관련된 제재조치(중도해지)를 한다.
- 21.2.4 설비고장 위약벌 적용방법
 - 가. 항목이 동시에 2건 이상 발생된 경우 고액항목 1개만 적용한다.
 - 나. 설비피해에 대한 손해금액은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5 조치방법

가. 설비고장 위약벌 부과사항 발생시 설비운영부서장은 5일 이내에 발생 내용을 공사계약부서로 통보한다.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4/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나. 계약부서는 다음과 같이 설비고장 위약벌의 수납 조치를 취하고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① 해당 공사대금 지불시 공제
 - ② 설비고장 위약벌을 부과하여야 할 설비고장이 공사비 지불 후 발생된 경우에는 발생 월에 지불되는 공사비에서 공제
 - ③ 공사비 지불 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로 하여금 입금하도록 조치
 - ④ 회계처리는 지체상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21.3 정비회사 소속 정비인력 개별관리
 - 21.3.1 정비회사 소속 정비인력 작업시행 중 안전사고 유발이나 안전지적시에는 개 인별 벌점을 부과하여 일정기간 공사 참여를 제한하거나 기능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벌점부과 및 제재기준
 - ① 벌점 부과기준

안전지도서	안전사고시	
발 행	부상	관련 작업자
20점/건	50점/건	30점/건

② 제재기준

누계벌점	50점	100점	150점	200점
	이상	이상	이상	이상
공사참여 중지기간	2개월	4개월	6개월	자격취소

- 나. 제재기준은 동일공사에서 중복지적이 가능하며, 공사감독원나 설비운영부서 간부가 조치하되 지적시에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반드시 정비업체관리시스템 에 입력한다.
- 다. 설비운영부서는 정기적으로 정비업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하여 정비회사 소속 정비인력 자격정지 기간 또는 취소현황을 확인·관리하여한다.
- 라. 자격정지 및 취소는 해당 누계점수 발생일 기준으로 하고, 제재로 인한 자격 취소자의 자격 재취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 마. 벌점 누적적용 기간은 적용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 누적된 벌점으로 한다.
- 바. 정비인력 자격 취소 또는 정지는 인재개발원의 요청에 의거 지정관리기관에 서 시행하여야 한다.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5/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22. 정비회사 평가

정비회사에 대하여 시공품질평가를 시행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22.1.1 평가대상 : 정비회사 시공 대상공사

22.1.2 평가시기 : 기성고검사 및 준공검사시

22.1.3 평가주관: 공사감독원

22.1.4 평가방법

- 가. 공사별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에 따라 송변전시공품질점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공사감독원 또는 공사감리원, 간부점검과 준공검사시 지적된 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 나. 설비운영부서는 공사별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평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기성고 및 준공검사 보고서에 첨부하여 계약 담당부서로 송부한다.
- 다.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결과 400점 이상 감점 회사는 중도 해지한다.

23. 불법 하도급 확인

- 23.1 불법 하도급 및 기술인력의 중복 등록(보유)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 및 인력의 중복 등록(보유)여부를 확인한다.
 - 23.1.1 불법 하도급 여부
 - 가. 확인책임자: 설비운영부서장
 - 나. 확인반원 : 확인책임자가 지정한 자(2~3명)
 - 다. 실사회수: 계약기간중 년 1회 이상
 - 라. 결과보고 : 정비회사의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경우 설비관리사업소(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사주관부서로 보고
 - 23.1.2 타 분야(송전, 배전) 정비인력 중복 등록(보유)여부
 - 가. 확인책임자 : 변전(운영)부 차장
 - 나. 확인회수 :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 (정비회사관리시스템 등 전산자료에 의한 확인도 가능)
- 23.2 정비회사는 등록된 정비인력 및 시공관리책임자의 재직을 증명할 수 있는 급여 지불명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전산정보자료 자격원부를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6/61
제・개정일자	2019. 9.27	

매 분기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3.3 발주부서는 각종 정비공사 동원인력의 등록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 23.4 정비회사는 하도급 사유 발생시 관련 법규의 정식 하도급 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 23.4.1 도급받은 전기공사 중 공정별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 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동시 다발 병행공사로서 회사의 동원능력 부족공사
 - 나. 회사의 기술력 부족으로 해당공사 수행능력 부족공사
 - 다. 회사의 경영여건 악화에 의한 수행능력 부족공사
 - 라. 기타 발주자가 인정하는 공사

24. 정비회사 종사자 교육

- 24.1 정비회사의 종사자는 연 1회 우리회사에서 실시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등록된 종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4.1.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필수 · 선택인력
 - 24.1.2 교육시기 : 1/4분기 내
 - 24.1.3 교육주관 : 설비관리(운영)사업소
 - 24.1.4 교육내용
 - 가. 관내 변전설비 현황 및 변전설비의 특징 등 전반적인 이론 · 실무교육
 - 나, 안전작업 수칙 준수 및 변전설비의 시공품질 확보에 관한 사항 등
- 24.2 정비회사는 인재개발원 주관으로 시행하는 직원 업무능력 향상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 24.2.1 교육대상 : 시공관리책임자 및 필수·선택인력
 - 24.2.2 교육시기 : 계약기간 중
 - 24.2.3 교육주관 : 인재개발원 또는 지정교육기관
 - 24.2.4 교육내용
 - 가. 변전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신기술
 - 나. 안전 · 시공품질 향상 교육
- 24.3 정비회사는 '24.1~24.2'항에 의한 교육 이외에 우리회사에서 시행하는 다음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7/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24.3.1 교육대상 : 재해방지책임자(사업주)

24.3.2 교육시기 : 연 1회

24.3.3 교육주관 : 한전 본사 안전관리 주관부서

24.3.4 교육내용 :

가. 정부정책 변화

나. 고급 안전경영 정보, 안전관리기법 등

25. 긴급동원

고장순시 및 고장복구, 기타 긴급 정비업무에 대한 정비회사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설비운영사업소와 정비회사간 비상연락망을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설비운영사업소장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회사는 타 공사에 우선하여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26. 모의고장 복구훈련

정비회사는 설비운영부서에서 모의고장 복구훈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훈련상황에 적합한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훈련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설비운영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7. 기타사항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 및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기준은 '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9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9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8/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부 칙

이 기준은 '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08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1년 12월 01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5년 12월 01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29/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부 칙

이 기준은 '15년 11월 01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7년 11월 01일 이후 계약분 부터 적용한다.

- 부 칙(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개정 2017. 10. 25.)
- ① (시행일) 이 기준은 2017.10. 25일부터 시행한다. ('18~'19년 변전정비회사에 해당)
- ② (적용례) 이 기준의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내용은 2017.10.25일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기준은 '19년 10월 04일 이후 발주분 부터 적용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0/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별표#1]

필수장비(공구) 확보기준

장 비 명	단위	수량	규 격
압 축 기	대	1	유압식 100 [Ton], 150~520m㎡
절연저항 측정계	"	2	① 1000 [V], 2000 [MΩ] ② 500 [V], 1000 [MΩ]
Torque Wrench	"	2	\bigcirc 2 ~ 800 N.cm², \bigcirc ~ 1400 N.cm²
전기드릴	"	1	휴대용 220V 13~20φ 충격장치부
콘덴서 용량계	"	1	0.5~10 [μF]
Hook-On meter	"	2	① 0~300A, ② 0.1~5A
Potable Compressor	"	1	1ф220V, 5kg/cm²
Regulator	"	1	감압장치 및 압력호스 付 0.1~15kg/c㎡, 0.1~150kg/c㎡
절단(연마기)	"	1	휴대용
진공청소기	"	1	휴대용
공사용 차량	"	1	5톤 이상 트럭(카고크레인 장착)
안전장구	식	1	 안전모 10개 안전허리띠 5개 활선접근경보기 10개 구획로프 100m 각종 안전표시찰 등
방염복	Set	5	아라미드계 섬유 1Set/인 이상

주1) 공사용 차량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자격확인 시 차량과 함께 보유사실을 확인 받아야 함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1/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별표#2]

주변압기 및 개폐장치 보통점검 가능회사의

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기준

□ 장비(공구) 확보기준

구 분	장 비 명	단위	수 량	규 격
변압기	OT 내압시험기	대	1	0~60kV 이상
차단기	Time Tester	대	1	3상 동시측정 가능, 6Ch 이상
	SF ₆ Gas 누기측정기	대	1	정밀급
	SF ₆ Gas 수분측정기	대	1	정밀급
	SF ₆ Gas 분석기	대	1	SO ₂ 분석기능 구비
	SF ₆ Gas 주입기	대	1	
	접촉저항측정기	대	1	
	SF ₆ Gas 측정용게이지	대	1	0~10Kg/cm²(0.5급)
공 통	전자내시경	대	1	촬영부 외경 12mm이내 길이 3m이상
0 0	Torque Wrench	SET	1	M12~M28

- 주1) 정비회사에서 선택사항으로 확보할 경우 주변압기, 개폐장치의 보통점검공사 가능 주2) 장비의 규격 및 조건은 변전전문회사업무처리기준의 장비확보 기준과 동일함.
- 주3) 임차에 의한 장비 확보도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여 자격확인시 장비 와 함께 보유사실을 확인 받아야 함(변전전문회사에 등록된 장비의 임차는 인정 하지 않음)

□ 인력보유기준

구 분	자 격	보유인원
변전전공	변전전문회사업무처리기준의 변압기 분야 필수기능인력 자격 이상인자	1명이상
변선선 5	변전전문회사 업무처리기준의 개폐장치 분야 필수기능인력 자격 이상인자	2명이상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2/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별표#3]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서

계약	계약번호:			결	팀 원		부 장
공사	번호:			_			
	사 명 :			재			
	세 명 :	(대표자 :)	^п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감점	근 거
	품질관리계획	품질계획서 현장보유 여부	<u>_</u>		1회 -10점		
	수행체계	시험 및 검사계획서 현장보유 여	早		1회 -10점		
	적정성	시공관리책임자 현장 상주	-여부	_	1회 -50점		
	11-11 Trul 1	필수인력 확보 및 사전변	경여-	부	1회 -30점		
	인적 품질관리 활동적정성	주요작업 유자격자 투입여	부		1회 -30점		
	20700	작업자 교육시행 여부			1회 -10점		
_		시공품질점검표 운영상태			1회 -30점		
시공		공종별 시공기준(절차)준수	공종별 시공기준(절차)준수여부		1회 -30점		
품 질	활동 석성성 <u></u>	공종별 필수시공장비 사용여부		1회 -30점			
		시험장비 보유 및 검교정 시	시험장비 보유 및 검교정 시행여부		1회 -30점		
		직업조건(안전거리 등) 준수여부(NCR발행)		1회 -50점			
	공사용	부적합자재 사용여부(NCI	3 발	행)	1회 -30점		
	자재관리	지입자재 관리대장 운영	지입자재 관리대장 운영 적정성		1회 -10점		
	적성성	자재(사급·지입) 관리상태		1회 -50점			
		합계			배점: 400점		
	안전사고 발생		ス	나망	1명 -50점		
	인신사고 결정		부상		1명 -30점		
	공사중 과실로 설비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1회 -50점		
시 공	공사하자로 설비고	장 발생			1회 -50점		
관 리	휴전계획	30분 이하			1회 -10점		
	시간지연	30분 초과			1회 -30점		
	시공지시 불응	시공지시 불응			1회 -20점		
	안전지도서 발행			1회 -20점			
민 원	민원발생 (무기명 '	민원 제외)			1회 -60점		

※ 평가기준 근거는 NCR, 안전지도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함

작성일자 : . . .

평 가 자 : (인)



업무표준 No	H0-송변	년-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3/61
제・개정일자	201	19. 9.27

[별표#4]

정비회사 시공품질 및 시공관리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적 용 대 상	평 점	상한치
시공품질	(1)단위공사시공품질	단위공사별 평가	평균평점	400
		사 망	-50점	
	(2) 안전사고 발생	부 상	-30점	
	(3) 공사중 과실로 설비고장 발생	작업자 과실	1회 -50점	
시공관 리	(4) 공사하자로 설비고장 발생		1회 -50점	300
	(E) 중 리 기 리 리 Al	① 30분 이하	1회 -10점	500
	(5) 휴전시간지연	② 30분 초과	1회 -30점	
	(6)시공지시불응		1회 -20점	
	(7) 안전지도서 발행		1회 -20점	
민원사 항	(8) 민원발생	확인된 민원에 한함 (무기명 민원 제외)	1회 -60점	100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4/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별표#5]

휴전작업 종류별 안전표지물 설치

작업명	안전구획표시 표준설치범위	안전표지물	비고
	○좌우 전면 3Bay이상 자석식 구획로프 ○M.Tr Bay시 좌우 Ry PNL 3면(전후면)	"활선"	
23kV VCB 점검(옥외)	 ○좌우 3Bay 전면철구간 구획표지망 ○휴전 Bay 측면 및 후 면 철구간 구획표지망 ○Ry PNL 좌우 3면 자석 식 구획로프(전후면) 		활 선 사 선
23kV SC 점검	○해당없음	○좌우 전 SC BANK "활선"	
170kV GIS 보통점검	 ○좌우 2Bay(전후면) 자석식 구획로프 ○휴전Bay-활선Bay간 측면 구획로프 ○Ry PNL 좌우 3면(전후면) 자석식 구획로프 	○후면 좌우 첫Bay "활선" ○후면 휴전Bay "사선" ○접지개소 -"접지중", "조작금지"	접지중 활 선 접 근 금 지
170kV GCB 점검(옥외)	○철구간 구획표지망 단, 철구간 사활선 구간 공존시는 차단봉 및 플라스틱 체인이용 작업 구간 표시 ○Ry PNL 좌우 3면(전후 면) 자석식 구획로프	○ 접지개소 : "접지중"	T A S CEPCO T S



변전<mark>정비</mark>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	년-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5/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작업명	안전구획표시 표준설치범위	안전표지물	비 고
154kV M.Tr 점검(옥내)	○휴전 M.Tr Ry PNL 좌 우 3면(전후면)	○출입문 "활선접근 금지" ○접지개소:"접지중"	전 현 주 보고 조 적 현 급리 이 시역소단 이 기페먼지 이 작업대당
154kV M.Tr 점검(옥외)	○좌우M.Tr 차단봉 및플라스틱 체인○휴전 M.Tr Ry PNL 좌우 3면(전후면)	○좌우 M.Tr "활선 접근금지" ○접지개소:"접지중"	○ 차단실시 :
362kV GIS 보통점검	 ○휴전Bay 안전구획로프 (옥외) ○차단봉 및 플라스틱 체 인(옥내) ○Ry PNL 좌우 3면(전후 면) 자석식 구획로프 	OLCP 휴전 Bay 양	· 지 공 중 자 그 지 구 점 검 중 중
362kV GCB 점검(옥외)	○철구간 구획표지망 단, 철구간 사활선 구간 공존시는 차단봉 및 플 라스틱 체인이용 작업구 간 표시 ○Ry PNL 좌우 3면(전후면) 자석식 구획로프	○접지개소 : "접지중"	BUMACIAN BUMACIAN (*) SEPCO
345kV M.Tr 점검(옥내)	○휴전 M.Tr Ry PNL 좌 우 3면(전후면)	○출입문 "활선접근금지" ○접지개소 : "접지중"	부도 4-1 작업장 구획표지만 전체 : # 550 전체 :
345kV M.Tr 점검(옥외)	○휴전 M.Tr Ry PNL 좌 우 3면(전후면)	○좌우 M.Tr "활선 접근금지" ○접지개소:"접지중"	대 전 (8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6/61	
제・개정일자	2019. 9.27		

VM(Visiual Management) 활동

No.	Item명	시 행 방 법	사례
1		 ◆ 적용 범위 : GIS 및 GCB 가스밸브 ◆ 규격 ● 색 상 : 가스주입중(백색) - 추가 ● 재 질 : 포맥스 ◆ 시공방법 PE원형(잠금장치) 및 안내표시 병행 	Hale 30
2	조작금지 커버	 ◆ 적용 범위 : GIS E(D)S 조작함 ◆ 규격 ● 색 상 : 적색(타포린) ● 형 태 : 직사각형 ◆ 시공방법 ● 작업중인 GIS E(D)S 조작함 부착 	The state of the s
3	개방금지 커버	 ◆ 적용 범위 : GIS 점검창 ◆ 규격 • 형 태 : 천 덮개 • 색 상 : 적색 ◆ 효과 • 활선부 점검창 개방 방지 	W A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S
4	작업장소	 ◆ 적용범위 : 보호배전반 ◆ 규 격 ● 형 태 : 사각 고무카펫 (60 × 80mm) ● 색 상 : 녹색 바탕 황색 글씨 	
5	승탑방지	 ◆ 적용범위 : 옥외철구 비대상 작업구간 ◆ 규 격 ● 색상 : 황색바탕 활선위험 승탑금지 적색글씨 - 크 기 : 붙임 도면 참조 - 세부 규격 : 붙임 도면 참조 • 형태 : 탈부착 사각천막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7/61	
제・개정일자	2019. 9.27	

適格審查基準

【 공사명 :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8/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분야별 배점 및 세부심사기준)

- ① 적격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배점은 붙임#1, 붙임#2와 같다.
- ② 심사분야별 세부심사항목 및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기준[붙임#1-1.#2-1] 참조
- ③ 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입찰공고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④ 경영상태 평가의 경우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 (적격심사 결격)

낙찰자 선정 이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가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에 의거 평가하되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적격심사기준 등의 열람)

계약담당직원은 적격심사기준 등을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수시로 조회·출력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며,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한다.

제5조 (시공실적의 증명 등)

시공실적의 증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하는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의하되 협회의 최종통계 완료년도를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의 실적을 적용하며 실적의 누락, 오류 등으로 인한 평가상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39/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제6조 (경영상태 평가)

- ① 경영상태의 항목별 평가기준인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하"평균비율"이라 한다) 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년도의 비율을 적용하다.
- ② 회사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계전체 가중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 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함. 이하 같음)로 평가하되,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경영상태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③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신설 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주식회 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 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를 말함. 이하 같음]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되, 외감법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 이하 같음)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봄.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 결산서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 시 최초결산서로 본다.
- ⑤ 당해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제④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함.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으로 평가한다.
- ⑥ 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보고서(회계연도말결산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포함)상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 경영상태 평점에서 5/100를,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10/100을 감점처리하며, 제④항 및 제⑤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 대상업체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 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 ⑦ 신용평가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 할 경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0/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 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신용평가등급』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다만,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의 가장 최근 등급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합병한 업체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제7조 (제출서류 등)

- ① 계약담당직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한다.
- ② 제1항의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지정한 기일내(통보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상 지정)에 다음의 적격심사서류 2부(원본 1부,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증명
 -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서류
 - 3. 기타 별도 제출 요청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 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 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8조 (심사방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가 제출된 날 또는 보완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1/61	
제・개정일자	2019. 9.27	

송변전운영처

제9조 (낙찰자 결정 및 통보)

- ① 계약담당직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 예정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7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 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 이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 ④ 제1항에 의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가 필요한 경우 제10조의 재심사 요청기간 경과후 통보한다.
- ⑤ 1개 회사가 2개 이상의 사업소에 중복 낙찰된 경우에는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제8항의 낙찰절차에 따른다.

제10조 (재심사)

- ① 제9조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 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 제9조 제3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2/61	
제·개정일자	2019. 9.27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12조 (관련규정 등의 준용)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동시행령·동시행규칙 및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등을 준용한다.

제13조 (기타사항)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작성 하여 시행할 수 있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3/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붙임#1]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기준

I.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8.0 2.0	상한점수 9.0점
	시공경험 【 18 】	○ 전문자격 보유 - 변전전문회사 자격보유 - 전력신기술 또는 특허보유	4.0 0.5	상한점수 <u>4.0점</u>
		○ 전기공사 시공인력 보유 - 전기분야 기술자 보유 - 변전 전기원 양성 또는 보유실적	0.5 <u>1.5</u>	상한점수 <u>2.0점</u>
		○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 대응 가능한 회사	<u>3.0</u>	
당해공사 수행능력 【 30 】	경영상태 <u>【</u> 12 】	입찰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 1.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영업기간	5.5 5.5 1	
		2.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u>12</u>	
	일자리 <u>창출실적</u> 【 +3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붙임 5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우대 <u>가점</u> (주5)
입찰가격 【 70 】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 (주3)	7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4)
합 계			100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4/61	
제・개정일자	2019. 9.27	

주1)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 영업기간의 평가는 전기공사업체가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에서 조사 확인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하였 던 전기공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주2) 입찰가격 평가산식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9.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3) 계약부서 결정사항으로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참조하여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별도 심사 기준(항목 및 배점 등)에 의거 심사 가능

주4)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의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5/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주5)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 당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 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6/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붙임#1-1]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 1. 시공경험 (18점)
 - 가.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평점 상한은 8.0점)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최근 5년간 전기공사 실적누계액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8(점)
 -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평점 상한은 2.0점)
 - ①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 평점= (최근 5년간동종공사실적누계액 당해공사공사원가예가산출조서상의사정액)×2점
 - ② 동종공사의 범위: 3.12항 <u>및 3.13항에</u> 해당하는 변전설비의 공사실적<u>, 변전정비</u>회사 시공 대상공사(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5항)
 -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① 평점은 최종 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②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 공사 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신고제출확인서, 한전 사업 소의 시공실적 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공사원가 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 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 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 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③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공 실적(VAT 포함) 증명서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VAT포함) : ₩ 워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7/61	
제・개정일자	2019. 9.27	

라. 전문자격 보유(상한 점수 4.0점)

- ① 변전전문회사 자격보유: 평점한도 4.0점
 - 평가기준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변전전문회사 자격이 유효한 회사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당시의 급수

○ 평점기준

구 분	1급	2급	비고
주변압기 전문회사	1.8점	1.6점	
개폐장치 전문회사	1.8점	1.6점	
작업팀 추가 보유	0.5점/취	^로 가팀당	등급 구분없이 배점

- ② 전력신기술 또는 특허보유: 평점한도 0.5점
 - 평가기준
 - ⑦ 전력신기술 인증 보유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고시된 실적 중 3.12항에 해당하는 변전설비와 관련된 보유 실적으로 한다.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신기술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 © 법인명의로 개발한 신기술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에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인정하며, 권리의 이전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 나 특허 보유실적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된 실적 중 3.12항에 해당하는 변전설비와 관련된 보유 실적으로 한다.
 - 심사기준일 현재 보호기간내에 있는 특허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 법인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평가대상으로 하며, 공동 등록한 특허의 경우 특허등록원부에 표기된 지분율로 인정하며 특허등록원부에 지분율이 표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한 업체수로 나누어 인정하며, 권리의 이전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 © 위의 ⑦, Û항 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등록과 전력신기술 인증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1건만 인정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8/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평점기준

구 분	전력신기술	특허	비고
배 점	0. 25점/건	0. 25점/건	

- 평점방법[상한점수 0.5점] = 전력신기술 + 특허
 - ⑦ 평점방법[상한점수] : $\sum [(전력신기술 \times (배점 \times \frac{1}{n})) + (특허 \times (배점 \times 지분율))]$
 - ※ 특허등록원부 지분율 미표기 경우
 - $\sum [(전력신기술 \times (\text{배점} \times \frac{1}{n})) + (특허 \times (\text{배점} \times \frac{1}{n}))]$

n: 참여한 업체수

- 마. 전기공사 시공인력 보유(상한 점수 2.0점)
 - ① 전기분야 기술자 보유 : 평점한도 0.5점
 - 평가기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전기공사 기술자 보유 ⑦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처리일 또는 고용보험 가입통지서의 신고일 기 준
 - 제출서류
 - ②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 기술자 자격증
 - (H)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고용보험 가입 통지서(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 평점기준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비고
배 점	0.3/인	0. 2/인	0.1/인	

- 평점방법[상한점수 0.5점] = \sum [(특급×배점)+(고급×배점)+(중급× 배점)]
- ② 변전 전기원 양성실적 또는 보유실적 : 평점한도 1.5점
 - 평가기준
 - ⑦ 양성실적 : 최근 5년 이내 변전전기원을 양성한 실적(0.5점)
 - ①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변전전기원(1급·2급)을 양성한 실적
 - 보유실적: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변전전기원 또는 필수기술자, 필수기능자 보유실적(1.5점)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의 처리일 또는 고용보험 가입통지서의 신고일 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49/61	
제・개정일자	2019. 9.27		

© 변전전문회사업무처리기준에 의한 필수기술자는 변전전기원 1급 자격, 필수기능자는 변전전기원 2급 자격으로 인정

ⓒ 제출서류

- 지정교육기관에서 발급한 변전전기원 자격인증서, 필수기술자격 확인서류 등
- 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또는 고용보험 가입 통지서(가입자 자격 상세내역 포함)
- ② 동일한 인력에 대하여 양성실적과 보유실적을 중복하여 배점할 수 있음

○ 평점기준

구 분	변전전기원 1급	변전전기원 2급	배점한도	비고
양성실적	0.15/인	0.1/인	0.5	
보유실적	0.2/인	0.15/인	1.5	필수기술자는 1급 자격 필수기능자는 2급 자격

- 평점방법[상한점수 1.5점] = 양성실적 + 보유실적
- 양성실적 또는 보유 : \sum [(변전전기원 1급 × 배점)+(변전전기원 2급 × 배점)]
- ③ 동일한 인력에 대하여 ①항과 ②항을 중복하여 배점할 수 있음
- 바. 당해 사업소의 송변전설비 고장시 신속대응 여부(3점)
 - ① 평가기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 해당사업소(직할 및 전력지사) 관할구역(시, 군, 구)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 경우 "시"는일반시 임).
 - 단, 회사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2개 이상 설비운영사업소의 관할구역에 중첩된 경우, 해당 회사에서 중첩된 사업소 중 1개 사업소에서만 투찰한 경우에는 투찰한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하며 중첩된 사업소 중 2개 이상 사업소에 투찰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 선정여부에 관계없이 중첩된 사업소 중설계공사비(예비가격기초금액)가 큰 1개 사업소에서만 가점을 부여한다.
 - ② 자격인정 기준 : 당해 사업소(직할 및 전력지사) 관할구역 내에 주된 영업소 소재 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법인은 등기부등본(등기일 기준), 개인은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사업자 등록증명 원)으로 확인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0/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2. 경영상태 (12점) (1) 또는 (2) 중에서 선택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기능>
 - (1)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 기준치×0.5 미만	<u>5.5</u>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o 기준치×0.5이상~기준치×0.75미만	<u>5.0</u>
= <u>부채총계</u> × 100 (%)	○ 기준치×0.75이상~기준치×1.0미만	<u>4.5</u>
AAAモ 5.5	o 기준치×1.0이상~기준치×1.25미만	<u>4.0</u>
	○ 기준치×1.25이상	<u>3.5</u>
@ 3174F 0FN0	○ 기준치×1.5이상	<u>5.5</u>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o 기준치×1.2이상~기준치×1.5미만	<u>5.0</u>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	o 기준치×1.0이상~기준치×1.2미만	<u>4.5</u>
[5.5]	o 기준치×0.7이상~기준치×1.0미만	<u>4.0</u>
	○ 기준치×0.7미만	<u>3.5</u>
③ 영업기간	ㅇ 3년 이상	1.0
	○ 3년 미만 1년 이상	0.9
L 1 1	ㅇ 1년 미만	0.8

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 기준치×1.0미만	<u>5.5</u>
_ 부채총계 × 100 (9/)	o 기준차<1.0° 상~기준차<1.3미만	<u>5.0</u>
= <u></u> 부채총계 자기자본 × 100 (%)	o 기준차×1.3°/상~기준차×1.6미만	<u>4.5</u>
	o 기준차×1.6°/상~기준차×1.9"만	<u>4.0</u>
<u>【 5.5 】</u>	○ 기준치×1.9이상	<u>3.5</u>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ㅇ 기준치×1.0이상	<u>5.5</u>
= 유동자산 유동부채 × 100 (%)	o 기준차(0.9°)상~기준차(1.0미만	<u>5.0</u>
- 유동부채 ^ 100 (%)	o 기준차(0.8°)상~기준차(0.9미만	<u>4.5</u>
	o 기준차(0.7°)상~기준차(0.8°)만	<u>4.0</u>
<u>【 5.5 】</u>	○ 기준치×0.7미만	<u>3.5</u>
③ 영업기간	ㅇ 3년 이상	1.0
(1)	ㅇ 3년 미만 1년 이상	0.9
1 1	ㅇ 1년 미만	0.8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1/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라.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마.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 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 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함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배점한도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12.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u>11.5</u>
BB-	В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0.7
B+, B0, B-	В-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9.9
CCC+० ठो-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u>8.6</u>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위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업무표준 №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2/61		
제・개정일자	2019. 9.27		

[붙임#2]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기준

Ⅱ. 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전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 점	비고
당해공사 수행능력 【 10 】	시공경험 【 6 】 경영상태 【 4 】 일자리 창출실적 【 +3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실적누계액 비율 (당해업종 구분없이 평가) ○당해공사 공사원가산출 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대비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붙임 5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과 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 손익계산서,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0 2.0 2.0	최대 6점을 한도로 함 우대 가점 (주4)
입찰가격 【 90 】		○입찰가격에 의한 평점 계산 (주1) <계약부서 결정사항 임>(주2)	90	
기타 당행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여부	△10	주3)
합 계			100	

주1) 입찰가격 평가산식

- 산식 = 90 20 × | (<u>88</u> 입찰가격) ×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3/61		
제・개정일자	2019. 9.27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2) 계약부서 결정사항으로 계약부서 판단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참조하여 본 기준에 의하지 않고 별도 심사기준(항목 및 배점 등)에 의거 심사 가능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1.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 및 감점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는 협회 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보유현황을 확인하되 구성원 중 1개업체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
 - 나.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 2.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의한다.

주4) 일자리창출 우대가점 평가

- 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계약담당 자가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 2.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 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 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 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송변전운영처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4/61	
제・개정일자	2019. 9.27		

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 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 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5/61		
제・개정일자	2019. 9.27		

[붙임#2-1]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 기준

1. 시공경험 (6점)

- 가.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평점 상한은 4점)
- 나.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실적(평점 상한은 2점)
 - 평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동종공사 실적누계액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산출기초조서상의사정액)×2(점)
 - 동종공사의 범위 : 3.12항 <u>및 3.13항에</u> 해당하는 변전설비의 공사실적<u>, 변전정비</u>회사 시공 대상공사(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5항)
- 다. '가, 나'항의 공사실적 산정기준
 - 평점은 최종계산결과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공사실적 인정범위
 - 최근 5년간 공사실적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종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실적(부가가치세 포함)을 적용
 - 공사실적증명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세무신고자료를 확인하여 발급한 "전기 공사 실적 확인원 및 세부내역서"
 - ※ 기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한 전기공사 실적 신고 제출확인서, 한전 사업소의 시공실적 확인서등은 불인정
 -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및 전기공사 실적누계액은 부가가 치세 포함된 금액임
 - 실적금액 등은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 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제출서류 : 기준 제5조에 의한 전기공사 시공실적 및 당해공사와 동종공사 시 공실적(VAT 포함) 증명서
 - ※ 당해공사 공사원가예정가격 산출기초조서상의 사정액 (VAT포함): ₩ 원
 - 전기공사 이외의 공사실적은 해당 협회에서 발행하는 공사실적을 적용하되 상 기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제출 서류'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6/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2. 경영상태 (4점) <계약부서 사항으로 별도기준으로 심사가능>

분 류 기 준	세 목	배점
① 최근년도 부채비율 = <u>부채총계</u> 자기자본 × 100 (%) _【 2 】	 ○ 기준치×1.0 이하 ○ 기준치×1.0초과~ 기준치×1.3미만 ○ 기준치×1.3이상~ 기준치×1.6미만 ○ 기준치×1.6이상~ 기준치×1.9미만 ○ 기준치×1.9이상 	2.0 1.8 1.6 1.4 1.2
 ② 최근년도 유동비율 = 유동자산 × 100 (%) 【 2 】 	 ○ 기준치×1.0이상 ○ 기준치×0.9이상~ 기준치×1.0미만 ○ 기준치×0.8이상~ 기준치×0.9미만 ○ 기준치×0.7이상~ 기준치×0.8미만 ○ 기준치×0.7미만 	2.0 1.8 1.6 1.4 1.2

※ 기준치

항 목	부 채 비 율	유 동 비 율
기 준 치	() %	() %

- ※ 제출서류 : 전기공사협회 확인서 또는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 ※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 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제6조 ③항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로 평가하되,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함



변전<mark>정비</mark>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7/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

[붙임#3]

변전정비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 결과표

1. 공 사 명 :	
2. 사업소명 :	
3 단 당 차 :	(저하버ㅎ :

적격순위	상 호	대표자	주 소	적격심사 득점	비고

20			
4U	•	•	•

작	성	자	:	(인)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8/61					
제・개정일자	20	19. 9.27					

[붙임#4]

정비회사 제재사실 통보서

○ 계약번호 및 일자:

○ 공사번호 :

○ 공 사 명 :

○ 시공회사명

거	시공부서										
결	차 장	부 장									
재											

(제재사실)

1. 발생일시 : 년 월 일 (시 분경)

2. 공사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내용

○ 벌 점 부과 점 (누계 점)

○ 위 약 벌 부과 원

상기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명 날인합니다.

년 월 일

시공회사 대표자 성 명: (인)

시공관리책임자 성명: (인)

※ 위반사실 적발경위 (간략히)

작성자:소속 성명 (인)

주) 계약담당부서는 위반내용이 본 기준 21.1.3항 내지 21.1.4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 대장에 기록하고 제재항목별 해당 누계벌점에 해당될 경우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

※ 계약부서 담당자 : (인)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59/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붙임#5]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8.07.11]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년 월분)(제1쪽)

※ 제2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76	, -1-	' '	>		-1-1,] = [해당되		니기 긴기긴			2 11	1-1	•						
접수번호 접수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공통		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 하수급인관리번호(건설공사등 미승인 하수급인에 한함)																					
등등 사업장	소자	시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 칭 험사무대항								행기	관	명			
VIHO	전화번호 (유신			<u>년</u>) (휴						휴대전화)					FAX번호								
	공시	나명 						왕리 건설압								(한진	[]	(직 - 른 시		한 장			
		성명																					
주민	등록	번호(외=	국인등록번호)	_							-					-					-		
국	^{남적}		체류자격																				
 전	전화 년	번호(휴대	대전화)																				
	2	직종 부:	호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5	11	12	13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근로일수 ("o"표시	È)	16	17	18		20	16	17	18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 /	21	22	23		25	21	22	23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근로일	일수	일핑	명균 근로시간	일		٨	· 간		일		시	간		일		시	간		일		시	간	
	보수	지급기초	^호 일수	일			일				일					일							
	보수	총액(과서	네소득)	원				원				원					원						
		임금총액	Ч	원					원					원					원				
		직사유 를																					
보험.	보험료부과구분 (해당자만)																						
부호			사유																				
지급월						월					월					월					월		
국세청 일용	!	총지급액(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원		
근로 소득		비과세소득			원				원					원					원				
소득 신고	5	원천징 주맥	소득세	원									원	원					원				
		구액 ⁻	지방소득세	원					원					원					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예	[]	아니	1오	[]예	[]0	니오	[]예	[]	아니	오	[]예	[아니	· 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후단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신고인(사용자·대표자)
[]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변전정비회사 업무처리기준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60/61				
제・개정일자	2019. 9.27					

(제2쪽)

제출 (첨부)서류

해당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1. 이 서식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를 위한 서식입니다.
 2.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은 고용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 작성하고, 산재보험 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3.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합니다)과 임업 중 벌목업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의 경우 "임금총액"만 적고, 그 밖의 업종의 사업장 소속 일용근로자는 "보수총액(과세소득)"과 "임금총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을 모두 적습니다.
 4.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라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이십니다.
- 있습니다.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장별(건설공사별)로 고용관리 책임 자를 지정·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일용근로소득신고 관련>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주가 제1쪽의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포함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제4항에 따라「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4)에 따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란"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미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국세청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미제출・부실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신고 대상자에 대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신청 관련>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 작성방법

 . "직위"는 고용관리책임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부여받은 직위(예시: 부장, 팀장, 과장, 사원 등)를 작성하고, "근무지"는 고용관리책임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중 해당하는 칸에 체크하며, "직무내용"은 고용관리책임자의 임무 이외에 겸직하고 있는 직무내용에 해당하는 다음의 코드번호를 기재(복수 기재 가능)합니다.
 01. 인사・노무 02. 회계・세무・경리 03. 경영・관리 04. 홍보・영업 05. 기술・기능 06. 기 타. "하수급인 관리번호"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 "직종부호"는 ◈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보수(※ '보수'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수를 말합니다)지급기초일수는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일수"를 말하며,이 경우 "보수지급의 기초가된 일수"에는 현실적으로 근로하지 아니한 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무급휴일, 무급휴무일 또는 결근일 등 보수지급일수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 일수가됩니다.
 .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으로서,해당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으로써,해당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이직 사유코드"

 1. 회산의 사정에 의한 이집(폐역 고사즈도 고대 조크

- 계약기간 만료 등)
- ◈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공사중단, 공사 종료, 계약 ◈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부상, 출산 등) ◈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 "보험료부과구분"에는 근로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부호를 적습니다(※ 해당자만 기재합니다)

		부괴	범위		
부호	신자	보험		고용보험	대상 근로자
	신째보험	임금채권부담금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51	0	0	х	Х	09.고용보험 미기입 외국인근로자, 11.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부괴대상)
52	0	Х	х	х	03.현장실습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의 교육이수자) 13.항운노조원(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 24.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4	0	х	0	0	22.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의토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55	Х	Х	0	0	05.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선원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적용자 07.해외파견자(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자)
56	Х	Х	0	Х	01.별정직 • 임기제 공무원 16.노조전임자(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
57	0	х	0	Х	14.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58	0	Х	Х	0	21. 자활근로종사자(생계급여 수급자)

- 9.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란의 "총지급액(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해당 월별로 각각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0. "지급월"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을 적습니다.
 11. "총지급액(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12. "비과세소득"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3. "소득세"는 [(1일 임금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1일 100,000원)] × 원천징수세율(6%)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원천징수액란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업무표준 No	H0-송변-기준-0022						
개정・페이지	<u>17</u>	61/61					
제・개정일자	<u>2019. 9.27</u>						

[별지] 한국고용직업분류(KECO '18) 중 소분류

83. 전기 · 전자 설치 · 정비 · 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